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민홍철 · 김정호 · 허성무
서천호 · 강대식 · 김한규
염태영 · 서일준 · 윤후덕
부승찬 · 차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항공·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장을 지속해 2030년대에는 약 1,400억 달러(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전체 시장의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을 해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23년 약 2조 원에 이르고 해외 정비 비중이 59%에 달함.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해외 정비 비중은 71.1%에 달하고 있음. 군용기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해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총 정비비의 44.4%를 차지했고, 향후 공군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8년부터는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내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사천·인천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사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특히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기체·엔진·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항공 MRO 사업을 발전시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K-에어로·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항공종합정비업자와 저비용항공사가 항공정비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항공정비 등 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등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 등 업체로 발주하는 등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평가 및 인증·실용화 및 표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항공종합정비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 및 항공종합정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항공정비 전략기술로 선정할 수 있고,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으며,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정비특화단지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 또는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항공정비 전략기술 관련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항공종합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기체, 엔진, 기타 부품 및 장비품 등에 대한 점검, 검사, 시험, 유지, 성능복원, 수리 및 개조(이하 “항공정비”라 한다)를 포괄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와 가목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시설운영 등의 업무

3. “항공종합정비업자”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정비특화단지”란 항공종합정비업의 활성화 및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5. “거점공항”이란 항공종합정비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6. “저비용항공사”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기 운항의 안전 이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기존의 항공사보다 낮은 운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항공사를 말한다.
7.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란 항공종합정비업자와 저비용항공사가 항공정비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공종합정비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정비특화단지·거점공항의 조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항공종합정비업 육성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항공종합정비업·항공정비특화

단지 및 거점공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항공종합정비업·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5조(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의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3.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국내외 시장·기술 동향에 관한 사항
4.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

성에 관한 사항

5. 항공종합정비업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외 항공정비 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이하 “해외발주정비업무”이라 한다)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지원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관련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 ① 항공종합정비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종합정비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공종합정비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비특화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정비특화단지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

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거점공항의 지정·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항공종합정비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 관련 핵심·원천기술의 항공정비 전략기술로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부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보

3. 항공정비·항공안전·방산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
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및 육성

제9조(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이하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조

성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정비특화단지등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특화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종합정비업자와 저비용항공사는 항공정비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는 항공정비 분야의 공동정비 및 공동구매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의 구성 방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관련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항공 운수권(「항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을 말한다)의 배정 및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시 가점
2.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의 감면
3. 설비투자 및 교육훈련 비용 우선 지원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세제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에 참여한 항공종합정비업자 및 제12조에 따른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출자·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항공종합정비업자가 외국 원제작사와의 합작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국내 투자 유치

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와 협력하여 항공종합정비업 전용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항공종합정비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종합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의 범위·절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거점공항 운영의 효율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공항으로 지정된 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닐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공정비를 위하여 착륙하는 해외 항공기에 대한 출입국, 검역 및 통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술개발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2.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사업
3.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의 협력,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

4.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장비 및 기술의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 사업

5. 그 밖에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이하 “항공종합정비기술자”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종합정비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항공종합정비업자가 해외 항공정비 업체·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의 해외법인 설립, 합작투자, 국제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컨설팅·보험·보증 등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항공정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종합정비업 관련 실적 및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체계(이하 “항공정비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정비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항공정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항공종합정비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9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종합정비업자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합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항공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제21조(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 및 항공종합정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공정비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항공정비 전략기술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항공정비 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5. 그 밖에 항공정비 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항공정비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제7항에 따른 승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항공정비 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정비특화단지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유출한 자

제2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종합정비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

교통부로부터 정부 지원 항공 MRO(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기체·부품·엔진 정비 및 운항 전후 점검 등 일련의 정비·점검을 말한다)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항공종합정비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3조(항공정비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가 항공정비를 위하여 사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비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거점공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가 항공종합정비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공항은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공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외발주정비업무의 국내 항공정비 업체로의 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저비용항공사의 지정, 추진 절차 등 시범사업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